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BA-RB, COB-RA, DJA-RB, EBH-RA, EGF-RB, EIB-RA, EKA-RA, IGK, KGA-RA

책임 부서: Office of the Chief Academic Officer; Office of Systemwide Safety and Emergency Management;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

MCPS 소유지에서의 소형 무인 항공기 시스템(드론) 비행
Flying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Drones) on MCPS Property

I. 목적

승인된 드론 조종사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소유지에서 교육 목적으로 MCPS 교직원 또는 MCPS 학생 비행하는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UAS)(이하 "드론")을 사용하기 위한 지침과 절차를 수립합니다.

다른 오락용 사용자가 MCPS 소유지에서 사용하는 모든 크기의 드론을 금지합니다.

II. 배경

연방법과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드론에 대한 허용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FAA 는 FAA 규정에 대한 지식을 갖춘 드론 조종사에게 인증을 부여합니다. FAA 규정은, 다른 요건 중, 특정 MCPS 자산을 포함하는 제한 공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FAA 규정은 사용 또는 통제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서 드론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II. 정의

A. 이 규정의 목적상 *드론*은 FAA 에서 정의하는 UAS 로, 250 그램 이상이며 55 파운드 미만의 무인 항공기 [1] 이자 미국 영공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1] 국가 영공 시스템(NAS)에서 55 파운드 미만의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또는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규칙은 14 CFR Part 107 이며, Small UAS Rule 이라고 지칭합니다.

조종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하는 데 필요한 관련 요소(통신 링크 및 무인 항공기를 제어하는 부품 포함)를 포함합니다.

B. *드론 조종사*란 현재 FAA 원격 조종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FAA 의 소형 무인 항공기 규정(Part 107)에 따라 요구되는 FAA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C. *드론 사건*[2]의 의미–

1. 드론 사용으로 인한 재산 또는 드론 손상 및/또는

2. 드론 회수 -

a) MCPS 소유지 외부, 다른 공공 소유지 또는 사유지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야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b) 도움이 필요한 모든 회수 학생과 교직원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드론을 회수하기 위해 도로에 들어가거나, 지붕에 접근하거나,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D. *MCPS 소유지(MCPS property)*란 MCPS 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부지, MCPS 버스, 기타 MCPS 차량, 학생이 참여하는 MCPS 후원 활동의 시설 및/또는 부지를 포함한 모든 MCPS 학교나 기타 시설을 의미합니다.

E. *현장 관리자/지정인(site administrator/designee)*은 MCPS 시설의 학교장/이사장 또는 그들의 지정인을 의미합니다. 현장 관리자/지정인은 드론 비행을 허가하고 비행 중 MCPS 부지 내에 있을 것을 약속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부지를 떠나야 하는 경우 대체 현장 관리자를 지정하여 현장에 대기하도록 합니다.

F. *현장 스폰서(site sponsor)*란 드론 비행 요청을 받고, 필요한 허가 서류를 조율하고, 드론 비행에 참여하는 학생을 감독하는 MCPS 직원을 의미합니다.

a) 드론 조종사가 초청 발표자인 경우, 드론 비행에 참여하는 학급의 교사가 현장 스폰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장에 있는 동안 드론 조종사 또한 교사의 책임입니다.

[2]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위험,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이 있거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사건에 대해서는 MCPS 규정 COB-RA, *사건 보고*를 참조하십시오.

b) 드론 조종사가 학급이 드론 비행에 참여하는 MCPS 교사인 경우, 드론 비행 요청을 시작하고 필요한 승인 제출을 조정할 수 있지만 학생 참가자를 감독하기 위해 다른 MCPS 교직원이 동석해야 합니다.

G. *학생 조종사(student operator)*는 FAA 인증 드론 조종사가 아니며 FAA 인증 드론 조종사의 직접 감독하에 드론을 비행하는 MCPS 학생 또는 교직원입니다.

IV. 지침

A. 드론의 허용된 용도

1. Office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al Programs(OCIP)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항공 교과과정과 같이 교육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MCPS 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드론을 교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MCPS 학생과 교직원은 FAA 인증 드론 조종의 감독하에, 또한 승인된 비행 계획에 따라 MCPS 소유지에서만 드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섹션 V.B.1-2 참조)

3. 다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 드론의 과외 사용은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b) MCPS 소유지에서는 드론과 모형 항공기의 오락용 비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MCPS 규정 KGA-RA, *Community Use of Public Schools*, 그리고 Montgomery County Office of Community Use of Public Facilities(CUPF) *시설 사용 허가 계약 참조).*

c) FAA 규정에 따라, FAA 에서 정의한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제한 공역에 속하는 MCPS 소유지에서는 실외 드론 비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d) 다른 야외 단체 활동(예: 스포츠 행사/연습 또는 수업) 근처에서는 비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 다음과 같은, 학생이 참여하는 드론 비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사람이나 차량 위로 비행하는 것

(2) 학교, 경기장 또는 MCPS 소유지의 기타 구조물 근처나 그 위를 비행하는 것

(3) 운영 목적(예: 건설 또는 버스 차량 주기장 모니터링)으로 (1) 또는 (2)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최고 운영 책임자/지정인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B. 비행 요건(교육용)

1. 승인된 드론 조종사(섹션 V.B.1 참조)와 현장 스폰서가 동석해야 하며, 학생에 대한 적절한 감독(섹션 III.F 참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석"이란 드론 조종사가 비행 통제 범위 내에 있고 현장 관리자가 MCPS 부지 내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비행하는 동안, 드론은 반드시

a) 드론 조종사의 시야 안에 있어야 하며,

b) 비행 계획에 표시된 MCPS 소유지 경계 내에서, 400 피트 이하로 유지합니다.

3. 조종사/참가자

a) 드론이 다른 참가자와 분리된 통제된(예: 그물망 또는 케이지) 구역에 있는 경우에도 모든 조종사/참가자는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b) 학생 드론 조종사는 교관이 제공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FAA 인증 원격 조종자 요건과 본 규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한 후 교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조종 장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4. 드론 사양

a) 제어가 해제되었을 때 선회하는 드론만 MCPS 구역에서 비행이 허용됩니다.

b) 제조업체에서 승인하지 않은 부품으로 개조한 드론의 비행은 금지됩니다.

V. 승인, 기록 보관 및 사고 보고 절차

A. 책임 부서

1. OCIP 재단은 비행 계획 신청서를 검토 및 승인하고 교육 목적으로 MCPS 소유지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는 MCPS 직원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2. 운영 목적(예: 건설 또는 버스 차량 차고지 모니터링)으로 MCPS 소유지에서 드론을 비행하기 전 Office of Systemwide Safety and Emergency Management(OSSEM) 시스템 전체 안전 팀장 및 the Division of Financial Services 위험 관리 전문가에게 알려야 합니다.

3. MCPS 기금으로 드론을 구입하거나 드론 기증을 받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MCPS 기금으로 드론을 구입했거나 기증받은 드론을 수락한 모든 MCPS 부서는 다음 기관과 상의해야 합니다 –

   a) MCPS 규정 EGF-RB, *Retention and Disclosure of MCPS Video Records* 를 준수하기 위한 OSSEM 영상 기록 전문가.

   b) Division of Financial Services 의 위험 관리 전문가.

   c) MCPS 규정 DJA-RB, *Purchases of Materials and Equipment Using Nonappropriated Funds and Acceptance of Donated Items* 를 참조하십시오.

B. 드론 조종사 및 드론 비행 계획 승인

1. 드론 조종사 신청서

   현재 FAA 원격 조종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다음을 따 드론 조종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1) MCPS 양식 360-26, *MCPS Drone Operator Application* 을 작성합니다.

(2) 신청자의 현재 FAA 발급 원격 조종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3) 사이트 관리자의 승인 및 OCIP 재단 사무실로의 모든 양식 제출에 책임이 있는 사이트 스폰서에게 양식 360-26 을 제출합니다.

(4) 양식 360-26 과 양식 360-32, *MCPS Drone Flight Plan Application* 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드론 비행 계획 승인

a) 다음과 같이 특정 날짜 또는 진행 중인 일련의 날짜(예: 수업 커리큘럼의 반복 구성 요소)에 대해 비행 또는 일련의 비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MCPS 양식 360-32, *MCPS Drone Flight Plan Application* 을 작성하여 비행 예정일 최소 2 주 전에 OCIP 재단의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2) 양식 360-32 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a) 제안된 드론 조종을 위한 MCPS 양식 360-26 과 FAA 원격 조종사 인증서(드론 운영자가 이전에 같은 학년도에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양식 360-26 과 현재 FAA 인증서를 포함)

(b) 비행 계획 지도

b) 지속적인 비행 계획 승인은 한 학년도(7 월 1 일~6 월 30 일)까지만 허용됩니다.

c) 드론 조종사 및/또는 현장 스폰서는 비행이 진행될 장소와 시간에 대한 최신의 승인된 비행 계획서를 OCIP 재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C. 드론 사고 및 사건 보고서

1. 드론 비행으로 인한 사고는 즉시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현장 관리자는 MCPS 규정 COB-RA, *Incident Reporting* 을 적절히 이행합니다.

2. 양식 360-33, *MCPS Drone Incident Report* 를 작성하여 24 시간 이내에 OCIP 재단 사무실과 OSSEM 시스템 전체 안전 팀장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현장 관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3. 현장 관리자, OCIP/지정인 또는 OSSEM/지정인과의 상의하에 승인된 비행 계획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으며, 드론 사고의 결과로 프로그램 조정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4. FAA 는 사고로 인해 사람이 중상을 입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또는 수리 또는 교체 비용 (둘 중 낮은 금액)이 500 달러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힌 경우(드론 이외의 재산), 드론을 조종 원격 조종사가 10 일 이내에 FAA 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CPS 의 목적상, 현장 후원자와 현장 관리자는 드론 조종사와 협력하여 적시에 신고서가 제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D. 기록 보관

1. OCIP 재단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일지를 승인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a) 현재 FAA 원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 목적으로 승인된 MCPS 드론 조종사로 등록되어 있는 MCPS 교직원,

   b) 승인된 드론 비행 계획, 또한

   c) 보고된 드론 사고.

2. 현장 관리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드론 비행에 대한 드론 비행 일지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견본 일지는 OCIP 재단 사무국에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드론 비행 일지 -

   a) 승인된 비행 계획과 승인된 조종사 양식 및 제출된 모든 사고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또

   b) 요청 시 OCIP 또는 OSSEM 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출처: 49 USC 44809: Exception for limited recreational operations of unmanned aircraft; 14 CFR Part 107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Montgomery County Office of Community Use of Public Facilities (CUPF) *Facility Use License Agreement*

규정 변경사: 새 규정, 2024 년 6 월 5 일 승인.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A.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1)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 정보와 연방, 주 또는 지방 관련 요건은 버전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문서에 포함된 진술과 참고자료보다 우선됩니다.
최신 정보는 온라인 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www.montgomeryschoolsmd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ı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ı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Well-Being and Student Services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 240-740-3109 ı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ı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ı TitleIX@mcpsmd.org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 or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or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시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시다.

2024년 7월